

##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-1-5 사증 발급 기준

2026.01.05. 주호치민총영사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국 절차 등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재외공관에서 <b>F-1-5(방문동거, 90일) 사증</b> 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청 자격<br>(한국측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·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<br>※ 단,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·영주자격이 없더라도 초청 자격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청 사유<br>(자녀양육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 등) |            | ① 원칙 : 자녀가 <b>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</b> 초청 가능<br>② 한부모 및 다자녀(3명) 가정 : 자녀가 <b>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</b> 초청 가능<br>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b>예시 : 2022년 현재, 사증 신청일 기준</b><br/>             1. 자녀가 2013년생(한부모·다자녀 가정은 2010년생)인 경우 2022년 9월까지만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음.<br/>             2. 자녀가 2012년생(한부모·다자녀 가정은 2009년생)인 경우 초청할 수 없음.           </div> ③ 인도적 사유 : <b>초청인 부부 또는 자녀에게 중증 질환·중증 장애</b> 가 있는 경우<br>※ 이상에서 “자녀”에는 결혼이민자의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녀도 포함됨(단, 외국인 자녀의 경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, 귀화허가 신청 등 국적취득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함). |
| 초청 가능 인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결혼이민자의 <b>부모 : 2명</b><br>○ 결혼이민자의 <b>부모 외 가족 : 1명</b><br>※ 다른 가족을 초청했다면 부 또는 모 초청 불가, 부 또는 모를 초청했다면 다른 가족 초청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청 가능 횟수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① 원칙 : <b>자녀 1명당 2회</b><br>※ 부모 모두를 초청한 경우 2회 초청한 것으로 간주<br>②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/또는 ③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: 횟수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피초청 자격<br>(베트남측)              | 원칙         | ○ 결혼이민자의 <b>부 또는 모</b> (동시 체류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외         | ○ 결혼이민자의 <b>만 19세 이상 형제자매, 전혼관계 출생 자녀</b> (미성년자 불가)<br>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b>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(단, 위의 ‘인도적 사유’가 있는 경우는 제외)</b><br/>             1.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 질병(암, 거동 불편 등) 또는 장애,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경우<br/>             2. 실질적인 양육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증 발급 제한                      | 초청인        | ○ 초청인이 불법고용, 허위초청 등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한 경우 또는 과거에 다른 피초청인(본국 가족)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<b>5년간 초청 제한</b> (단, ③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간 초청 제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초청인       | ○ 신청인에게 불법취업 경력이 있으면 범칙금 등 납부일로부터 <b>5년간 사증 제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체류 기간의 상한                     | 자녀 연령 등 기준 | ① 원칙 :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<br>②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: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<br>③ 인도적 사유 :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국 기준      | ○ <b>입국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이상과 같은 발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초청인이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증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(F-1-5)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

## ㉠/㉡ 자녀 양육지원이 목적인 경우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연번 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본<br>서류           | 1  | ○ 사증발급 신청서<br>※ 여권<br>※ 여권용 사진(3.5×4.5cm) 1장<br>※ 수수료(미화 3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동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2  | ○ 초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1 |
| 한국<br>서류<br>(초청인)  | 3  | ○ 신원보증서(보증기간: 입국한 날부터 3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2 |
|                    | 4  | ○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5  | ○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3 |
|                    | 6  | 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7  |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br><임신한 경우> 임신진단서 추가<br><한부모 가정의 경우> 양육 지원 대상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조정조서,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<br><재혼 또는 자녀를 입양·인지한 경우> 양육 지원 대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<br><자녀를 입양한 경우>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<br><자녀가 외국인인 경우> 양육 지원 대상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 접수증 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증 추가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8  | ○ 기본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9  | ○ 주민등록표 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0 | ○ 자녀의 재학증명서(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만 해당)<br>※ 주된 양육지원 대상 자녀 1명 것만 제출해도 무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1 | ○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2 | ○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(예: 외국인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베트남<br>서류<br>(신청인) | 13 |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(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(BAN SAO)의 원본 제출 (번역·공증 생략)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4 | ○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거주정보확인서 CT07 (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) 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5 | ○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6 | ○ 결핵 진단서(총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7 | 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><br>○ 거주정보확인서 CT07(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br>※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(이하 같음)<br>○ 출생증명서 (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(BAN SAO)의 원본 제출 (번역·공증 생략)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8 | 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진단서 등 ><br>○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(국립·공립병원 또는 대학·종합병원의 진단서만 인정) 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<br>○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 및 소명자료<br>※ 단, 이상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- 【유의사항】 ①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.  
 ②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.  
 ③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,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
 ④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·날인이 인감과 다른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
 ⑤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.  
 ⑥ 상시거주지 (địa chỉ thường trú)가 Gia Lai성 이남 지역이 아닌 경우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입증서류는 남부(Gia Lai성 이남 지역)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/CT08서식이며, CT07/CT08서식에는 [연.월.일 ~ 연.월.일 거주함] 혹은 [연.월.일 ~ 현재 거주중]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㉔ 인도적 사정(중증질환·중증장애)이 있는 가정 지원이 목적인 경우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연번 | 구비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본<br>서류           | 1  | ○ 사증발급 신청서<br>※ 여권<br>※ 여권용 사진(3.5×4.5cm) 1장<br>※ 수수료(미화 3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동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한국<br>서류<br>(초청인)  | 2  | ○ 초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1 |
|                    | 3  | ○ 신원보증서(보증기간: 입국한 날부터 3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2 |
|                    | 4  | ○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5  | ○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붙임3 |
|                    | 6  | 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7  |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br><임신한 경우> 임신진단서 추가<br><한부모 가정의 경우> 양육 지원 대상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조정조서,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<br><재혼 또는 자녀를 입양·인지한 경우> 양육 지원 대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<br><자녀를 입양한 경우>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<br><자녀가 외국인인 경우> 양육 지원 대상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 접수증 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증 추가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8  | ○ 기본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9  | ○ 주민등록표 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0 | ○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1 | ○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(예: 외국인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2 | <중증질환인 경우><br>○ 진료비 영수증 : 영수증 우측 상단 또는 진단서 등에 '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' 또는 '산정특례' 사실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3 | <중증장애인 경우><br>○ 장애인증명서 : '중증장애' 또는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'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베트남<br>서류<br>(신청인) | 14 | ○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(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(BAN SAO)의 원본 제출 (번역·공증 생략)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5 | ○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거주정보확인서 CT07 (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) 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6 | ○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7 | ○ 결핵 진단서(총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8 | 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호구부 등><br>○ 거주정보확인서 CT07 (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)<br>※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(이하 같음)<br>○ 출생증명서 (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(BAN SAO)의 원본 제출 (번역·공증 생략)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- 【유의사항】 ①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.  
 ②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.  
 ③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,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
 ④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·날인이 인감과 다른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
 ⑤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.  
 ⑥ 상시거주지 (địa chỉ thường trú)가 Gia Lai성 이남 지역이 아닌 경우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입증서류는 남부(Gia Lai성 이남 지역)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/CT08서식이며, CT07/CT08서식에는 [연.월.일 ~ 연.월.일 거주함] 혹은 [연.월.일 ~ 현재 거주중]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